

## 04\_창작 활동부터 경제적 이익까지! 저작권의 보호 범위

### #1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원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저작권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입니다. 먼저, 저작권의 권리를 살펴보고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2

#### ※ 저작권의 권리

“저작권에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자체가 권리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권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작권은 여러 개의 권리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입니다.

### #3

####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됩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일반에 공표하는 권리이며,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이 왜곡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원본 형태로 유지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물의 무단 수정이나 왜곡을 방지하고,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4

####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저작재산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문학, 예술, 음악, 영화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 기술적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인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창작 활동을 장려합니다.

## #5

### ※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6

### ※ 저작권자를 모르는 경우의 보호 기간

※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7

### ※ 법인이 저작자인 업무상의 저작물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이 됩니다. 법인이 저작자인 경우, 살아있는 저작자가 없다고 보며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8

### ※ 일신전속성의 이해 1항

※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9

### ※ 일신전속성의 이해 2항

※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는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0

그렇다면, 물품의 무늬나 사진도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11

※ 미술저작물의 종류

미술저작물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이나 색채를 통해 평면적이거나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술저작물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부터 조각과 같은 입체 작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게다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과 캐릭터도 미술저작물에 속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예술가들의 창의력과 능력을 통해 만 들어지며, 우리 일상에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 #12

※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 요건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 요건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미술저작물이 물건에 동일한 형태로 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작품이 사용된 물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딩크 넥타이 사례는 응용미술 저작물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니다. 이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히딩크 넥타이를 디자인한 작품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건에 복제될 수 있는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 요건과 관련된 판례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 #13

#### ※ 응용미술 저작물을 인정한 판례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①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고소인이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0. 7. 1. 이후에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한 것인 사실, ② 고소인은 위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1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③ 위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14

#### ※ 판례 해석

히딩크 넥타이 사례에서는 해당 도안이 우리 민족 전통인 태극 문양과 팔괘 문양을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응용미술 저작물은 실용성을 우선시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예술적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물건에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에 표현된 도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5

#### ※ 사진 저작물이란

- 사진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찍혀야 합니다.
- 촬영 과정에서 사진 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사

체의 선택, 구도의 조정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적인 목적이 아닌 사진,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사진이나 제품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사진은 사진의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이나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16

#### ※ 사진도 저작물로 인정 여부

예술적인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찍는 사진들은 추억을 기록하거나 SNS에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들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사진 작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예술적인 요소나 창작성이 충분히 담겨야 합니다.

### #17

#### ※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요건

일반적으로 사진 저작물은 예술적인 목적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술적인 사진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피사체를 가지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창작성과 예술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피사체를 가지고 촬영하는 사진끼리는 서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작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8

#### ※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상세페이지 사진 저작물 인정 여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제품 사진들은 대부분 광고 목적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진이 예술적인 요소나 창작성보다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진 저작물로서의 인정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제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면서 사진을 도용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충분한 창작성이나 예술적인 요소가 담겨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